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833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4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2.

주 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8,481,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4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758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. 10. 27. ‘피고는 원고에게 58,481,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4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내용의 승소판결(이하 ‘이 사건 선행판결’이라 하고,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‘이 사건 판결금 채권’이라 한다)을 받았고, 위 판결이 2010. 12. 22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2024. 6. 25.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항변 요지

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.

나.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

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,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(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확정일인 2010. 10. 22.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.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. 6. 25.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원고의 위 채권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.

다.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

- 1)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본다.
 - 2) 원고는 이 법원 2015카명7282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2015. 9. 1. 재산명시결정을 하여 2015. 9. 7. 피고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었으며, 피고가 위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2015. 11. 20.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명시 선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 - 3) 그러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‘최고’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,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,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, 상실된다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78606 판결 참조).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2015. 9. 7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, 원고가 그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취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. 따라서 위 재산명시결정이 가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.
- 한편 피고가 위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2015. 11. 20.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명시선서를 하기는 하였으나,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‘승인’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인데,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그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목록에 허위가 없음을 선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차법적 요청에 따라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법적 의무에 불과할 뿐이므로, 피고가 재산명시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 등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재산을 명시한 것을 두고, 그 재산명시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를 ‘승인’하는 의미로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.
-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재산명시결정, 피고의 명시선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,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라. 소결론

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승소가 확정된 원고가 그 판결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,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어,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 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정은영